

국가응급의료자료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9. 28.

개정 2017. 10. 20.

개정 2018. 7. 10.

전부개정 2020. 7. 1.

전부개정 2023. 10.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국가응급의료자료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응급의료자료” (영문명: Korean Emergency Medicine Information Database, KEMID)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정의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말한다.
2. “원자료”란 국가응급의료자료로서 입력오류 등이 정제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한다.
3. “보존용자료”란 통계연보 및 자료의 각종 활용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각 부서에서 영구 보존을 위하여 저장한 자료를 말한다.
4. “기초자료”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보존용 자료에서 입력오류 등을 정제하여 사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결과자료”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원자료와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처리목적에 부합하도록 결과로 도출한 최종 자료를 말한다.
6. “맞춤형연구자료”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기초자료를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추출·요약·가공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구축한 자료를 말한다.
7. “맞춤형분석자료”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제공하는 결과자료를 말한다.

8. “응급표본자료”란 국가응급의료자료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일정 비율의 표본을 추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하여 규격화한 자료를 말한다.
 9. “이용자”란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이용을 청구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을 말한다.
 10. “이용승인기간”이란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연구에 이용하는 기간으로서 이용자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승인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11. “학술연구”란 이용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위논문을 출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12. “산출물”이란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등을 말한다.
- ②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용어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동 지침 및 이용 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이용자는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제공·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가응급의료자료의 활용에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응급의료자료 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국가응급의료자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제공 변수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응급의료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응급의료자료의 비식별화 조치에 관한 사항
4. 국가응급의료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응급표본자료에 관한 사항
 6. 제6조2의제3항에 따른 사항
 7. 국가응급의료자료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보건·의료 연구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결의서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응급의료자료 제공 업무를 주관하는 부(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국가응급의료자료 운영위원회는 국가응급의료 자료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이용자료의 추가신청 등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센터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위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는 안건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 심의(이하 “정규심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심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결의서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속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등의 경비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위원이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에 연구 인력으로 참여한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에 따른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5조의2제2항, 제3항, 제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등) 위원장은 위원 또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2. 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3. 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제3장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이용 및 제공

제10조(이용자) ①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익적 목적의 학술연구, 정책연구,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2. 「국회법」 제21조부터 제22조의3에 따른 국회사무처 등(이하 “국회”라 한다)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 따른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 등이 주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
10.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람
11.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12. 그 밖에 센터장이 응급의료분야의 연구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1조(이용 신청) ①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응급의료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응급의료자료 제공신청서
2.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의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응급표본자료를 이용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응급의료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응급의료자료 제공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

③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용자가 맞춤형 분석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근거(법률)
2. 제공받으려는 자료의 산출정의와 대상 기간
3. 사용목적

④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이미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라도 동일한 국가응급의료자료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 정한 절차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안전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이용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센터장이 정하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이용 승인) 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용을 승인할 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이용승인기간을 정한다.

②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자료의 종류별 전수(全數)의 이용을 신청하는 등 이용을 신청한 자료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제공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11조 제1항, 2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제공결정통지서를 발부한다.

④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부한다.

⑤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3항의 납부고지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 신고 및 신청) ① 이용자가 국가응급의료자료 이용 신청 시 제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이용변경신고·신청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연구계획
2. 연구책임자
3. 공동연구자 등 그 밖의 사항

② 이용자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이용변경신고·신청서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용 자료의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제공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승인 취소) 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용 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연구책임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이용결정취소통지서를 송부한다.

1. 제12조제5항의 납부고지서에 따른 비용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이의신청) ① 국가응급의료자료 제공과 관련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응급의료자료 제공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제공원칙) 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게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비식별화, 민감성 정보의 삭제 등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저장매체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게 응급의료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응급표본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제공할 경우 자료의 질 관리를 위해 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와 이전 연도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5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신청이 들어온 경우 별도의 사안으로 협의하여 정의할 수 있다.

제17조(이용 종료) 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이용종료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② 이용자는 해당 연구가 종료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종료통보서를 산출물과

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산출물에 반드시 그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 종료에 따라 제출받은 산출물의 관리 등 국가응급의료자료 이용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제공 제한 등) 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용자가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별표 3의 기간 동안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제공받은 자료 또는 산출물을 신청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제공받은 국가응급의료자료를 다른 자료와 융합하여 개인 및 기관을 재(再)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위

③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를 등록 또는 게재한 국내외 학회 등에 산출물의 등록·게재·발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용자가 산출물에 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해당 이용자의 연구를 등록하거나 게재한 국내외 학회 등에 이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이용 중단)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소위원회가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한 경우

제20조(이용자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그 각 호의 사유로 중앙응급의료센터 또는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성실하게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그 밖에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승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년 내에 연구 종료통보서(연구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않는 이용자는 제18조, 제19조에 근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수수료 등)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제공 수수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수수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수료의 감액 및 면제가 필요하다고 소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수수료의 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23.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1조 2항의 개정지침은 모니터링시스템의 공지일로부터 적용한다.

자료제공 제한변수

| 변수 | 제한사유 | 제공형태 |
|--------------|--------------------------------|--|
| 대상자 연령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연령은 연속형 변수의 형태가 아닌 범주형 변수 의 형태로 제공 (예시: 23세 → 20-24, 1세 미만 영아는 별도 범 주로 구분, 혹은 연구자의 요구에 따라 구분) |
| 대상자 주소지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시군구 구분까지 제공하며 읍면동 이하의 주소는 제공불가 |
| 응급의료 기관명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응급의료기관명은 제공불가하나 응급의료기관에 임의의 식별자를 부여하여 제공 |
| 응급의료 기관주소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시군구 구분까지 제공하며 읍면동 이하의 주소는 제공불가 |
| 처치코드 | 대상자의 식별 우려, 제공용량부하 | 전수제공불가하나 연구자가 선별한 EDI 코드 제공 |

응급표본자료 제한변수

| 변수 | 제한사유 | 제공형태 |
|--------------------|-----------------------------|--|
| 대상자 연령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연령은 연속형 변수의 형태가 아닌 범주형 변수의 형태로 제공 (예시: 23세 → 20-24세) |
| 대상자 주소지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16개 시·도 구분까지 제공하며 시군구 이하의 주소는 제공불가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 응급의료 기관 종별 | 대상자의 식별 우려, 제공용량부하 | 권역센터, 지역센터는 그룹화 하여 제공 (예시: 권역센터 → 센터급이상) |
| 응급의료 기관명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제공불가 |
| 응급의료 기관주소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16개 시·도 구분까지 제공하며 시군구 이하의 주소는 제공불가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 주증상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주증상코드1, 일련번호1 제공 |
| 최초중증도 분류 일시 분류자 직종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제공불가 |
| 최종진료구역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제공불가 |
| 주된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제공불가 |
| 전문의 진료여부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제공불가 |
| 응급진료 결과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귀가, 자의퇴실, 전원, 입원, 사망으로 그룹화 하여 제공 (예시: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 → 귀가) |
| 전원보낸(낼) 의료기관 종류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제공불가 |
| 진단코드, 진단구분 | 대상자의 식별 우려 및 다른 자료원과의 융합 우려 | 퇴실 및 퇴원진단코드 및 진단구분 10개까지 민감상병코드 제외(예시: F01) |
| 처치코드 | 대상자의 식별 우려, 제공용량부하 | 제공불가 |

자료제공 제한기준

| 내용 | 세부설명 | 자료제공 제한 기간 | |
|-------------|--|------------|----------------|
| | | 최소 | 최대 |
| 목적 외 사용 | 연구계획서의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자료제공제한 5년 | 자료제공 제한 10년 |
| 양도 또는 공유 | 제공받은 자료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공유하였을 경우 | 자료제공제한 7년 | |
| 재활용 | 제공받은 자료를 요청목적이 끝난 후 파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였을 경우 | 자료제공제한 5년 | |
| 정보누설 | 자료 및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개인 또는 기관의 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 자료제공제한 5년 | |
| 자료조작 및 임의누락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 자료제공제한 7년 | |
| 사후자료 미제출 | 자료이용신청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자료파기확인서 및 결과물 등) | 자료제공제한 5년 | |

※ 위 해당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제한기간은 합산함

※ 단,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함

수수료 산정기준

| 구분 | 비용 |
|-------------|-------------------------------------|
| 자료제공 수수료 | ① 기본료 + ② 추가기술료 + ③ 추가비용 + ④ 가공변수비용 |

| 기본료 | <p>① 기본료 = 150,000원(224MB)</p> <p>☞ 기본료는 아래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근거로 책정됨 코드라인 수(20개*)× 코드라인 단가(12,293.6)×보정계수(0.6708) * 최근 1년간 평균 코드라인 수(중앙응급의료센터 기준)</p> | | | | | | | | |
|------------------|---|----|-------------|---------|-----|------------------|-----|----------|-----|
| 추가기술료 | <p>② 추가기술료</p> <p>☞ 추가되는 코드라인 수 만큼 증가된 코드라인 단가와 난이도 상향에 따른 보정계수 상향 값을 기본료에 추가 부가함 ※ raw data 요청의 경우 추가기술료 없음(단 세부코드 요청 시 부가가능)</p> | | | | | | | | |
| 추가비용 | <p>③ 추가비용</p> <p>☞ 데이터 제공 용량 *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부과 * 데이터 제공은 TEXT 형태로 제공되며, 용량 증가에 따른 구간별 비용을 적용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th> <th>이용량 구간 추가비용</th> </tr> </thead> <tbody> <tr> <td>224MB미만</td> <td>기본료</td> </tr> <tr> <td>224MB이상~1024MB미만</td> <td>90원</td> </tr> <tr> <td>1024MB이상</td> <td>80원</td> </tr> </tbody> </table> <p>ex) 국가응급의료자료-NEDIS 산출 자료 용량이 2044.5MB 인 경우 150,000원(기본료)+800MB×90원+1020MB×80원= 303,600원 (부가가치세 별도)</p> | 구간 |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 224MB미만 | 기본료 | 224MB이상~1024MB미만 | 90원 | 1024MB이상 | 80원 |
| 구간 |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 | | | | | | | |
| 224MB미만 | 기본료 | | | | | | | | |
| 224MB이상~1024MB미만 | 90원 | | | | | | | | |
| 1024MB이상 | 80원 | | | | | | | | |
| 가공변수 비용 | <p>④ 가공변수 단가(변수 1개): 75,000원(기본료의 50%)</p> <p>☞ 변수를 새로 생성하거나 별도 조건을 설정한 변수 추가 시 비용 발생</p> | | | | | | | | |

(1) 코드라인 단가

※ 코드라인(Line of Code)수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최소명령단위인 문장들의 수로서 주석문을 제외한 실행문, 환경선언문, 데이터선언문 등을 말함

※ 코드라인 당 단가

(단위: 원)

| 단 계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 합계 |
|--------------|---------|---------|---------|---------|----------|
| 코드라인당 단 가 | 2,335.8 | 2,950.5 | 3,933.9 | 3,073.4 | 12,293.6 |

※ 보정계수(0.6708)

= 규모별보정계수(0.65)×어플리케이션보정계수(1.2)×언어보정계수(0.8)×품질 및 특성보정계수 (1.075)

(2) 보정계수

가) 규모(코드라인수)별 보정계수

| 규모 | 보정계수 | 규모 | 보정계수 |
|-----------|------|-------------|------|
| 10,000미만 | 0.65 | 300,000미만 | 1.11 |
| 30,000미만 | 0.85 | 500,000미만 | 1.17 |
| 70,000미만 | 0.97 | 700,000미만 | 1.21 |
| 150,000미만 | 1.05 | 1,000,000미만 | 1.24 |

※ 코드라인수의 경우 보간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10,000코드라인 미만의 경우는 0.65를 적용하며 1,000,000코드라인 이상의 경우는 10,000코드라인당 0.0005씩 추가한다.

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

| 어플리케이션유형 | 보정계수 | 어플리케이션유형 | 보정계수 |
|----------|------|----------|------|
| 업무처리용 | 1.0 | 시스템용 | 1.7 |
| 과학기술용 | 1.2 | 통신제어용 | 1.9 |
| 멀티미디어용 | 1.3 | 공정제어용 | 2.0 |
| 지능정보용 | 1.7 | 지휘통제용 | 2.2 |

<어플리케이션유형 분류 기준(예시)>

| 어플리케이션유형 | 범위 |
|----------|---|
| 업무처리용 | 인사, 회계, 급여, 영업 등 경영 관리 및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 |
| 과학기술용 | 과학계산, 시뮬레이션, 스프레드시트, 통계, OR, CAE 등 |
| 멀티미디어용 | 그래픽,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응용분야, 지리정보시스템, 교육·오락용 등 |
| 지능정보용 |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
| 시스템용 | 운영체제, 언어처리 프로그램, DBMS,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원도시스템, CASE, 유틸리티 등 |
| 통신제어용 | 통신프로토콜, 에뮬레이션, 교환기소프트웨어, GPS 등 |
| 공정제어용 | 생산관리, CAM, CIM, 기기제어, 로봇제어, 실시간,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
| 지휘통제용 | 군, 경찰 등 군장비·인력의 지휘통제를 요하는 소프트웨어 |

다) 언어보정계수

| 언어구분 | 보정계수 |
|--|------|
| Assembly, 기계어, 자연어 | 1.9 |
|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 1.2 |
| COBOL, FORTRAN, PL/1, PASCAL, Ada | 1.0 |
| ABAP4, Delphi, HTML, Power 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등) | 0.8 |
| EXCEL, Spreadsheet default, Screen painter default | 0.6 |

라)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보정요소 | | 판단기준 | 영향도 |
|-------|-----------------------------------|--|-----|
| 분산처리 | 어플리케이션이 구성 요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 0 |
| | |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 1 |
| | |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 2 |
| 성능 |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 0 |
| | |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 1 |
| | |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 2 |
| 신뢰성 | 장애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 0 |
| | | 고장 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 1 |
| | | 고장 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 2 |
| 다중사이트 |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 0 |
| | |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 1 |
| | |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 2 |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 총 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 + 성능 영향도 + 신뢰성 영향도 + 다중사이트 영향도

수수료 감면 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국가응급의료자료 활용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 등의 수수료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 | 감면율(%) | | | 비고 |
|---|--------|-----|-----|-----------------------------------|
| | 100% | 80% | 50% | |
| ①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는 제외한다) | ○ | | | |
| ②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 ○ | | | |
| ③ 정보 공유 등에 관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와 MOU를 체결한 기관(약정서에 적시된 자료에 한함) | ○ | | | |
| ④ 중앙행정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자 (해당 과제에 한함) | | ○ | | |
| 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국가 응급의료이용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분야 논문을 작성하는 자 | ○ | | | |
| ⑥ 보건의료 분야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자 | | | ○ | *증빙자료: 수료증 /재학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

※ 수수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비용의 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서면결의서

| | |
|--|--|
| 위원회 |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
| 의안번호 | |
| 심의요청 일자 | 년 월 일 |
| 안건 및 내용 | |
| 심의결과 |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미승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심의의견 | |
| 본인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숙지 및 검토 후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 |
| 20 년 월 일 | |
| 소 속 직 위 위 원 | |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응급의료자료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심의결과 기재요령

- 미승인: 제출된 제공신청서 및 관련 서류로는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제출된 서류에서 연구의 수행 또는 분석방법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 * 제출된 연구계획서, 자료이용 범위, 분석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 국가응급의료자료 활용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공신청서

※ 작성방법은 아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 |
|------|--|---|--|
| 자료유형 | <input type="checkbox"/> 맞춤형연구자료-NEDIS | <input type="checkbox"/> 응급환자표본자료-NEDIS | <input type="checkbox"/> 외상등록체계자료-KTDB |
| 연구유형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 |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 | |

| | | | |
|--------------|---------------|--------|------|
| 연구명 | | | |
| 연구 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직위) | 연락처 | |
| | 주소지 또는 거주지 | 전자우편주소 | |
| 연구기간 (예정) | IRB 연구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 사용기간 (예정) | IRB승인 내역번호 | 승인번호 | 승인기관 |

| 공동 연구자 | 연번 |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E-mai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 보조원 | 연번 |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E-mai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 자료 상세 | 요청연도 | | |
| | 대상자 정의 | 산출조건 해당기간 심근경색(I21)으로 진단 받은 자 60세 이상 | |
| | 상병(진단)코드 | <input type="checkbox"/> 응급실 퇴실 | <input type="checkbox"/> 입원 후 퇴원 |
| | 검사, 처치 및 수술코드 | <input type="checkbox"/> 응급실내 | <input type="checkbox"/> 입원 후 |
| 데이터 파일 형태 | | <input type="checkbox"/> csv | <input type="checkbox"/> txt(텍스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연구 과제 요약 | 연구목적 | |
| | 연구내용 | <p>※ 국가응급의료자료 활용 및 분석 방법 중점으로 기술</p> <p>○ 대상자 정의 - (기간): - (선정 조건):</p> <p>○ 연구 내용</p> <p>○ 연구방법/ 분석방법 (구체적 기술)</p> <p>※통계방법론 예시: 만30세 이상(연구대상 집단, 대상자수 등)의 계절별 비타민D 평균 산출 및 평균차이 검정 위해(가설, 관심변수, 통계량 등) SAS PROC SURVEYMEANS 및 SURVEYREG(통계 프로시저) 사용</p> |
| | 기대효과/ 활용방안 | 예) ~에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
| | 활용계획 | []정책/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술대회 발표 []기타 () 중복체크 가능 함 |
| | 연구비 지원 출처 | [] 자체 []외부() |

| | |
|------|--|
| 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변수)이용신청서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및 연구계획서 각 1부(응급환자표본자료 신청 시 제출 항목 아님)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4. 보안서약서 각 1부 5. 재학증명서 및 학위논문연구계획서 각 1부 (대학원 석사·박사 논문에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귀하

기재요령

1. 신청서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원란은 인원수별로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책연구는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4. 학술연구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5. 상병(진단)코드 또는 검사, 처치 및 수술 코드 신청 시에는 세부 KCD 및 EDI 코드를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합니다.
 6. 첨부 서류
 - 가. 연구계획서: 기관위원회의 승인 또는 심의면제확인을 받은 연구계획서
 - * 연구비 지원을 받는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의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비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대과제 중 일부 세부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계획서)를 제출
 - * 연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과제협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 과제명, 연구책임자(성명, 소속, 직위), 연구기간(총 연구기간 및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비 지원기관 및 연구비(총 연구비 및 당해연도 연구비),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기대성과), 참여연구원(성명, 소속, 직위), 연구책임자의 주요 약력 및 연구 성과
 - 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와 보안서약서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별로 1부씩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 | |
|-----|--------------------------------|--------------------------------|--------------------------------|
| 작성자 | <input type="checkbox"/> 연구책임자 | <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자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조원 |
|-----|--------------------------------|--------------------------------|--------------------------------|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안내하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가응급의료자료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주소 또는 거주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귀하는 본 건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귀하

보안서약서

| | | | |
|-----|--|--------|--|
| 연구명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소속 | | 직위 | |
| 연락처 | | 전자우편주소 | |

본인은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공받은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제공받은 국가응급의료자료를 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대여·판매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국가응급의료자료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 중 정보주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 발생 시, 즉시 정보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지 하며, 해당 정보의 회수 또는 파기 등 필요한 협조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 제공받은 국가응급의료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 논문, 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의 결과물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출간물에 명시하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겠습니다.

※ (예시) 본 산출물(혹은 연구결과)은 국가응급의료자료(자료고유번호 기재)를 활용한 것입니다.

- 국가응급의료자료 이용 목적 달성 시 상기 자료 및 가공된 데이터 파일 일체를 폐기하겠습니다.
- 본인은 상기 보안항목(1 ~ 6)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귀하

제공결정통지서

| | | | |
|-------|----------------------|------------|---------|
| 관리번호 | | | |
| 신청 구분 | []자료이용신청 | []변경신고·신청 | []이의신청 |
| 연구명 | | | |
| 연구책임자 | | 자료유형 | |
| 심의결과 | []승인 []미승인 | 결정일자 | |
| 제공방법 | | 사용기간 | |
| 제공자료 | ※ 필요 시 세부 자료제공 내역 첨부 | | |
| 안내사항 | | | |
| 담당부서 | | 통지일자 | |
| 담당자 | | 연락처 | |

위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앙응급의료센터장

■ 국가응급의료자료 활용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

| | |
|------|--|
| 관리번호 | |
|------|--|

1. 신청·접수내역

| | |
|------|-------|
| 신청내역 | 연구책임자 |
| | 연구명 |
| | 제공자료 |
| 접수내역 | 접수부서 |
| | 담당자 |

2. 비용납부내역

| | | |
|------|---------------|-------------------|
| 고지금액 | ①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 | ②데이터이용료(기본료+추가비용) |
| | ③가공변수비용 | ④감면액 |
| | 계(①+②+③-④) | |
| | *VAT별도 | |
| | 감면사유 | |
| 납부방법 | | |
| 납부기한 | | |

위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자료이용종료예정통지서

| | | | |
|---------|--|-----------|--|
| 관리번호 | | | |
| 연구명 | | | |
| 연구책임자 | | 자료유형 | |
| 연구종료예정일 | | 자료제공 종료기한 | |
| 제공된 자료 | | | |
| 안내사항 | | | |
| 담당부서 | | 통지일자 | |
| 담당자 | | 연락처 | |

위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자료이용변경[]신고/[]신청서

| | | | | |
|------------|----------------|----------|------------|-----|
| 관리번호 | | | | |
| 연구명 | | | | |
| 연구책임자 | | 소 속 | | 직 위 |
| 연락처 | | 전자우편주소 | | |
| 신고 항목 | []연구계획 | []연구책임자 | []그 밖의 항목 | |
| 신청 항목 | []사용기간 | []요청자료 | | |
| 신고/신청 사유 | | | | |
| 신고/신청 세부명세 | | | | |
| 붙임 | ※ 필요 시 소명자료 제출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귀하

자료이용결정취소통지서

| | | | |
|--------|--|------|--|
| 관리번호 | | | |
| 연구명 | | | |
| 연구책임자 | | 연구유형 | |
| 승인결정일자 | | 취소일자 | |
| 취소사유 | | | |
| 안내사항 | | | |
| 담당부서 | | 통지일자 | |
| 담당자 | | 연락처 | |

위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연구종료통보서

(앞쪽)

| | | | |
|-----------|-------|-----------|--|
| 관리번호 | | | |
| 연구책임자(한글) | | 연구책임자(영문) | |
| 공동연구자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연구명(한글) | | 연구명(영문) | |
| 연구시작일자 | | 연구종료일자 | |
| 자료폐기여부 | []처리 | []미처리 | |
| 연구분야 | | | |
| 연구목적 | | | |
| 연구결과(요약) | | | |
| 색인(한글) | | | |
| 색인(영문) | | | |

(앞쪽)

| | 종류 | 부수 |
|--------------|--------------|----|
| 연구결과 활용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연구결과 산출물 1부. | |

<사후조치의 확인>

본 연구진(연구책임자 ○○○)은 위와 같이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으며, 생산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였습니다.

국가응급의료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종결됨에 따라 제공된 자료(연구과정에서 파생된 부속자료 포함)를 폐기하였습니다.

향후 본 연구진(연구책임자 ○○○)은 연구자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연구진(연구책임자 ○○○)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위와 같이 국가응급의료자료의 이용이 종료되었으며, 자료파기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귀하

이의신청서

| | | |
|------------------|--------|-----------|
| 관리번호 | | |
| 과제명 | | |
| 신청인 | 성명 | 소속기관 / 직위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 이의 신청 내용 및 사유 | | |

위와 같이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귀하

[부록]

(관련법률 및 규정) :조항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② 통계법

- 통계법 제18조제1항

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④ 정부조직법

- 정부조직법 제2조

⑤ 국회법

- 국회법 제21조
- 국회법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⑥ 법원조직법

- 법원조직법 제3조

⑦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2조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⑪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⑫ 개인정보 보호법